공연법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신성범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0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신성범 의원)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공연 관람자 대상 증표 제시 요구 등 근거 신설

1)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후단 신설>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 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 이 경우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는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현 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제1항[1]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2]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는바,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공연자 등이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출입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유해 공연물을 관람하지 못하도록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1) **「공연법」 제5조(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

2) **「청소년 보호법」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유해 공연물을 관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 공연물의 청소년 관람을 통제하기 위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연자 등이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라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김윤덕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나, 증표 제시와 관련한 「청소년 보호법」 제29조[3]제4항의

---

3)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입법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성인임이 자명한 경우와 같이 반드시 입장을 제한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이를 재량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4항의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4]이 포함되도록 개정되어 2024. 12. 27.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5] 이에 맞추어 신성범의원안과 같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시행일도 2024. 12. 27.로 맞출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증표 제시 요구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9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18호)과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정식 시행 예정임.

5) **법률 제19841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시행 2024..12.27.>

(의안번호 제220064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7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

나.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시 행정처분 면제

1)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 위치 등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가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제33조(행정처분) ① ----------. 다만, 제1호 중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연소자의 신분증

현 행	신성범의원안	김윤덕의원안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연소자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 중 제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제1항제1호[6]에 따르면 공연자 등이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고의·과실 여부 등을 불문하고[7] 6개월 내의 공연 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주류 등을 주문한 뒤 오히려 업주에게 영업정지 사항임을 주장하며 협박한 사례[8] 등이 발생하면서, 청소년이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업주에게만 행정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그 나이를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 등이 위와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공연자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까지 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또한, 「식품위생법」,[9] 「청소년 보호법」,[10] 「담배사업법」[11] 등

6)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7) 다만,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하는 것은 가능함.

8) 서울경제, “나이 속인채 술 마신 10대들 ‘영업정지 안당하려면 돈 내놔라'…너클 끼고 가게 사장 협박”, 2023.12.27., 연합뉴스TV, 나이 속이고 노래방서 먹튀…“경찰, 외려 피해자에 ‘뭘 잘했냐'”, 2024.2.2. 등 기사 참조

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및 폭행·협박과 같이 업주에게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2023. 10. 31. 법률 개정에 따라 '연소자'라는 용어가 '청소년'으로 변경되어 2024. 1. 1.부터 시행 중이므로, 김윤덕의원안의 경우 제33조제1항 단서의 용어도 이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28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318호)과 김윤덕의원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

9)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0)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06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647호)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회부되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